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58	C규칙에서 지정된 장소는 인도장소 이자 목적지를 말하고, 매도인은 그 지점까지 반드시 인도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C규칙에서 지정장소는 매도인이 그 운송을 마련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는 물품운송의 목적지이지만 인도장소나 인도항구는 아니다.
58	마찬가지로, 지정된 목적지가 애매한 CPT 거래조건 역시 매도인이 어느 인도지점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물품의 인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할지 여부에 대한 양국의 당사자에게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남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정목적지가 불명확한 CPT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물품운송계약의 목적지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의문을 남긴다.
59	같은 매도인이 반드시 물품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같은 매도인이 마련하여야 하는 물품운송의 목적지나 목적항이 될 수도 있다.
61	모든 C규칙에서 매도인은 인도지점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운송비용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주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므로 양국의 당사자는 목적지 어느 지점에서 운송주선을 위한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장소는 “CIF Dalian 항구” 또는 “CIP shenyang 내륙도시”와 같이 각 인코텀즈 규칙 명칭 뒤에 부가되는 지명을 말한다.	모든 C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인도 이후의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을 마련하도록 하므로 당사자들은 그 운송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해 인코텀즈규칙의 명칭 뒤에 부가되는 지명 예컨대 “CIF the port of Dalian” 또는 “CIP the inland city of Shenyang”이 곧 그러한 목적지이다.
62	매수인이 운송인을 통해 물품을 매수인 처분하에 놓인 장소와 시점에 이전한다.	물품이 매수인이 사용한 운송인의 처분하에 놓인 장소와 시점에 이전한다.
63	(양국의 당사자가 인도지점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매도인이 물품을 교부한 최초운송인으로 간주될 지도 모른다.	(양국의 당사자가 인도지점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매도인이 물품을 교부한 최초운송인이 관련운송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64	즉, 운송인은 인코텀즈 규칙을 따르지 않는 운송서류는 발행할 의무가 없다.	즉, 운송인은 인코텀즈 규칙에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66	(예: 공항 또는 창)	(예: 공항 또는 창고)
70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택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채택되더라도 매도인은 운송계약조건에 대해 매수인은 어떠한 의무도 없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택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채택되더라도 매도인은 운송계약조건에 대해 매수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없음을 강조한다.
107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인은 인코텀즈 DAP 규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인코텀즈 본 규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120	(6) 양하비용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6) 양하비용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인도장소/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133	(2) 운송방식 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측에 둠으로써 인도하기로 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2) 운송방식 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기로 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134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하는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A2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하는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선박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148	(8) 보험 매도인은 또한 인도지점으로부터 적어도 목적지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가 자국의 보험자에게 부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CFR 조건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보험 매도인은 또한 인도지점으로부터 적어도 목적지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가 자국의 보험자에게 부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CFR 조건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인코텀즈2020 CIF 하에서 매도인이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 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